

# 개인정보보호법

박용덕 박사

## profile

-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
- 목원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자산관리전공 외래강사
- 동국대/열린사이버대 실무교육 강사
- 경기도청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강사



# 개인정보보호법

## 1 개인정보의 개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 1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보호법

[https://youtu.be/pN\\_yhvuq-UY](https://youtu.be/pN_yhvuq-UY)



# 개인정보보호법

## 2 적용 대상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개인정보보호법

##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 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 개인정보보호법

## 4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은 개인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고유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보호법

## 4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 4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 4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 개인정보보호법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또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므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부인이 건물 출입시에 신분 확인과 출입증 교부를 위해서  
성명을 적고 신분증을 받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제한

###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의 제한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제한

### ◇ 안내판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 7 설치 목적 외 임의 조작과 녹음의 금지



버스회사에서 폭행사건, 범죄예방 등을 파악하기 위해 CCTV 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그러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 8 민감정보의 개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9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경우 정보 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 9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 개인정보보호법

## 1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주요내용 [시행 2020. 8. 5.]

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함.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하며, 현행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제7조, 제7조의8 신설, 부칙 제9조)



# 개인정보보호법

## 1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주요내용 [시행 2020. 8. 5.]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신설)

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 1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주요내용 [시행 2020. 8. 5.]

마.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제28조의4 신설).

바. 누구든지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 1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주요내용 [시행 2020. 8. 5.]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제6장 신설 등).

<법제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 11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 개인정보보호법

## 12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 13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 개인정보보호법

## 14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 법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 법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개인정보보호법

## 14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 ◆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 개인정보보호법

## 14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감사합니다

**박용덕**

**Mobile 010-4577-3445**